

改正前	改正後
<p>第 9 條 【圖書館및圖書振興基金】 ① 政府는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, 施設 및 資料의 확충,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및 研究, 기타 圖書館發展과 讀書振興에 필요한 資金에 應당하기 위하여 圖書館및圖書振興 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을 設置할 수 있다.</p> <p>② 基金은 다음 各號에 따라 文化觀光部長官이 관리· 運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·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보조 2. 讀書振興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보조 3. 其他 大統領令으로 정한 讀書振興事業추진 <p>③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政府出捐金 2. 法人· 團體 또는 개인의 寄附金 3.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4. 其他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 	<p>第 9 條 【圖書館및圖書振興基金】 (削除)</p>
<p>第 10 條 【圖書館및圖書振興委員會】 ①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讀書振興에 관한 다음의 重要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에 圖書館및圖書振興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圖書館發展 基本정책 2.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 3. 讀書振興을 위한 綜合計劃의 수립 4. 圖書館과 文庫의 設立· 운영 및 施設의 확충 5. 基金의 造成計劃 6. 基金의 관리· 運營計劃 7. 基金의 관리· 運用상 重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. 其他 圖書館政策과 讀書振興에 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 <p>② 地域社會에서의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讀書振興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自治 團體에 地方圖書館및圖書振興委員會(이하 “地方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· 地方委員會의 구성·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</p>	<p>第 10 條 【圖書館및圖書振興委員會】 (削除)</p>
<p>第 25 條 【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등】</p> <p>① 法人· 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 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항 생략</p>	<p>第 25 條 【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】</p> <p>..... 特別市長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登錄할 수 있다. 이 경우 市· 道知事는 登錄證을 교부한다.</p> <p>②·③항 (현행과 같음)</p>
<p>第 26 條 【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 지원】</p> <p>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(이하 “私立公共圖書館”)이라 한</p>	<p>第 26 條 【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 지원】</p> <p>① 市· 道知事는 </p>

<p>다)의 균형있는 발전과 閱覽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指導·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.....필요한 指導·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市·道知事는</p>
<p>第 27 條 【私立公共圖書館의 閉館申告】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閉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.</p>	<p>第 27 條 【私立公共圖書館의 閉館申告】..... 市·道知事에게</p>
<p>第 37 條 【設立 등】①항 생략 ②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礙人의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할 수 있다.</p>	<p>第 37 條 【設立 등】①항 (현행과 같음) ②..... 市·道知事에게</p>
<p>第 50 條 【權限의 위임·委託】 이 법에 의한 文化관광부장관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に 위임하거나 協會 및 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.</p>	<p>第 50 條 【權限의 위임·委託】..... 市·道知事.....</p>

수신 : 문화관광부장관

참조 : 도서관박물관과장

제목 :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

1.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문화관광부공고제2000-5호 “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”(2000.1.14. 관보 제14406호 20면) 관련입니다.
3. 위 입법예고안에서 ‘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’와 ‘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’ 관련 조항의 폐지는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와 기금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해 온 우리 도서관계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따라서 귀 부에서는 위원회와 기금관련 조항의 삭제에 상응하는 도서관 발전에 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제도적,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.
4. 또한 이미 1999.11.17일자 공문(한도협 제99-154호)으로 건의드린 바와 같이 사서자격 요건과 관련한 건의 내용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. 그 건의안은 전국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 전문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, 학계 및 모든 관종별 도서관 단체, 국립중앙도서관, 국회도서관, 대법원도서관 등 우리 도서관계 전문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‘사서자격증관련법규개정건의안작성특별위원회’에서 이를 심도있는 검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 이에 우리 협회는 동 건의안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와 도서관계는 여전히 기 건의한 바와 같은 의견을 확인하오니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.
5.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.